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78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윤준병·부승찬·문대림

이정헌 • 박희승 • 김주영

박민규 • 이상식 • 이병진

복기왕 • 이춘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을 통하여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초과 지급된 이자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되, 남은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하도록하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하여 개인 파산 및 자살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고, 많은 대부업자들은 제한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고 처벌이 미약하여 근절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의 상한을 기존 연 25퍼센트에서 연 20퍼센트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며, 특히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하고, 그 원금을 상황한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및 제8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분은"을 "경우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을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약정에도 불구하고"로, "초과 지급된"을 "지급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
- ⑥ 채권자가 제3항에 의하여 무효인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라 원본을 대차한 경우에는 그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 중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을 "경우 그 복리약정 전부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복리약정이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를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로, "자는 1년"을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3년"으로,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 2. 제2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금전대 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했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 |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 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20퍼센트-----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 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 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경우 그 이자에 관한 약정 전부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전대 <신 설> 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이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관한 약정을 포함한 금전대차 에 관한 약정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 ⑤ -----제3항에 의하여 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무효인 약정에도 불구하고----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 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 지급된-----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략)

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 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 여는 무효로 한다. <단서 신 설>

제8조(벌칙) <신 설>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 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u>6</u>	채두	<u></u> 원자가	제4형	나에	의	하	여
무3	호인	금전대	차에	관형	<u>카</u>	약	정
에	따리	- 원본을	을 대기	하한	경	우	에
는	ユ	원본의	반환	간을	청	구	할
	없다			_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 제5조(복리약정제한) ------

경우 그 복리약정 전부를--------. 다만, 복리 약정이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부 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 제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2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자 를 받은 자
 - 2. 제2조제6항을 위반하여 원본 의 반환을 청구한 자
 - ②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자(제1항제1호에 해 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3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